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외장
람	

제1503호 2020. 3. 26(목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16호 대곡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입법예고 ----- 2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- 516호

대곡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대곡4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3. 23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명 : 인천광역시서구 지적재조사사업 대곡4지구
2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3. 사업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99-3번지 일원
4. 사업기간 : 2017. 9월 ~ 2020. 3월
5. 공고기간 : 2020. 3. 23. ~ 2020. 4. 7. (15일간)
6. 토지조서 : 인천광역시 서구청(지적재조사팀)에 비치

구 분	종전지적		확정토지		증감현황		비고
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	
대곡4지구	474	867,887.0	474	865,100.0	-	감 2,787.0	

7. 관계서류의 열람

가. 관계서류 :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, 지상경계점등록부, 측량성과결정을 위한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

나. 열람기간 : 2020. 3. 23. ~ 2020. 4. 7. (15일간)

다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 560-4662)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-534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. 3. 26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서구의 맞춤형 복지 모델개발 등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‘서구 복지재단’을 설립함에 따라,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법인 서구복지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 등을 명시함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4조)
- 다. 정관 및 임원,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~ 제8조)
- 라. 조직 및 직원, 기본재산의 조성 및 출연금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 ~ 제11조)
- 마. 수익사업, 기금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 ~ 제14조)
- 바. 사업연도,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5조 ~ 제16조)
- 사.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,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7조 ~ 제18조)

아.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9조)

자.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0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4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복지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제출처

- 주 소 : (우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

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

- 전화번호 : 032-560-4291 (FAX 560-2738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 제32조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·개발
2. 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·관리·보급
3. 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·지원·협력
4.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
5.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컨설팅
6. 민·관 협력 및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·교류 지원

7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

8.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서 각 호의 “사회복지시설”이라 함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5조(정관)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의결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
8. 자산 및 예산·회계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12.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,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.

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하며, 대표이사를 겸한다.

③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⑤ 선임직 이사 선출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⑥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8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.

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
1.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2.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⑤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9조(조직 및 직원)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.

② 재단의 직원은 공개 채용하며, 이사장이 임면(任免)한다.

③ 재단의 조직·정원·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1조(출연금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 할 수 있다.

제12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기금)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기금의 이자 수입금
3. 재단의 사업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15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6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
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·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

제17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8조(지도·감독 등)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 할 수 있다.

제19조(공무원의 파견)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20조(운영규정)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단의 설립 준비)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,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예산의 조치)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,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재단의 최초 사업연도)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실 · 과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 · 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20.03.26.~04.06. ○ 내 용 - 의견수렴			
입 법 예 고			
협의개요	제 출 자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20.03.26.~04.06. ○ 내 용 - 구보게재 - 인터넷			